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2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박홍배・이기헌・이상식

민병덕 · 김태년 · 김현정

김남근 • 강득구 • 강훈식

한준호 • 박정현 • 김영진

이광희 • 이수진 • 박해철

서영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0조제2호 및 제162조제3호의2·제16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원인조사"를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및 공단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로,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출입하거나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

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 위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을 "중대재해, 중상해재해 및 역학조사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 및 중상해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제170조제2호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6조제1항 후단, 제3항 및 제4항, 제56조의2, 제156조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
	해를 말한다.
<u>3.</u> ~ <u>13.</u> (생 략)	<u>4.</u> ~ <u>14.</u> (현행 제3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
제56조(중대재해 <u>원인조사</u> 등) ①	제56조(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u> 원인조사</u> 등) ①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u> 가</u>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
	<u>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②

<u>가</u>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u>발생</u>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u>고용노동부장관의</u>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u>및 중상해재해가</u>
③및 중상
<u>해재해 발생</u>
<u>고용노동부장</u>
<u>관 및 공단등의</u>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
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
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출입하거나 해
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
담 등을 할 수 있다.
⑤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
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중상해재
해 원인조사 공개)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동종 •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 및 중상

해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 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 위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 조사의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 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 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 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 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u>정한다.</u>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u>중대재해, 중상해재</u>
해 및 역학조사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
1. ~ 3. (현행과 같음)

고개 바버 민 저가 그 바에 피

<신 설>

4. ~ 13. (생략) <신 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 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 설>

11. ~ 41. (생 략)

③ (생 략)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7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3의2.	제56	조에	따라	중대재해
조사	및	중성	해재ㅎ	내 조사에
참여히	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형 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 상해재해 원인조사

- 11. ~ 41.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u>발생</u> 현장 을 훼손하거나 <u>고용노동부장</u> 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 8.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및 중상
<u>해재해 발생</u>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
<u>의</u>
3. ~ 8. (현행과 같음)